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21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보건복지부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보건복지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1
 - 보건복지부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1
 - 보건복지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보건복지부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보건복지부 소관

○위원장 이만희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각 의원실로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도 해당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 안건의 세부 사항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실은 소위원회가 밤 12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소위 위원장을 맡으신 김기웅 위원님을 비롯해서서 양당 간사님 또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한 말씀 드리고, 특히 정부 측에서도 아마 늦게까지 많은 공직자들이 나와서 같이 심사를 진행한 걸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소위원장직무대리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직무대리를 맡은 김기웅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19일과 오늘 양일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보건복지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주의 9건, 제도개선 184건 등 중복 1건을 제외한 총 192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령을 준수하여 적시적인 공중보건장학생 반환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예산 투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 및 집행을 강화하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연도 말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구용역 발주를 지양하고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침을 개선할 것 등 12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회계연도 말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1건의 주의를 요구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징수한 해썹(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을 관계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귀속 처리하고 향후 국고 납입 후 예산 과정을 거쳐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체계로 전환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편성하여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등 2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백신의 도입·유통·접종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1건의 주의를 요구하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추진 경과와 실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일괄 중단할 것, 예방접종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교부액을 조정하며 누적 미지급금을 조속히 정산할 것 등 3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문제에 대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의 단계적 조정 또는 재설계 방안을 모색한다’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원장직무대리님과 소위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희 위원님.

발언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정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소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입니다.

장관님, 오늘 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사망사고가 반복될 때 정부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허종식 위원 간사님이 말씀하셔야지……

합의가 된 거예요?

○이수진 위원 아니, 합의된 거예요? 지금 현안질의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만희 잠깐만요.

뭐요?

○이수진 위원 영상 나오는 거 합의하셨는지, 현안질의……

○위원장 이만희 합의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현안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결산에 대한……

○위원장 이만희 아니, 결산 관련해 가지고 물론 하지만 발언 내용들은 꼭 이렇게 한정되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한번 들어 보시지요. 영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합의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이소희 위원 이 영상은 지난주 MBN 단독보도 영상입니다.

장관님, 최근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해당 치과는 현재도 진료 중이고 취재진이 신규 환자로 가장해 앞선 사망사고를 묻자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병원은 안내했습니다.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

는데 복지부나 관할 지자체가 해당 치과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은 보건소가 점검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장관님, 의료과실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추가 사고를 예방할 관리체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 체계에 따라 실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복지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관계 공무원을 통해 업무 상황과 시설, 진료기록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있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 해당 치과의 문제를 알리려던 민원인에게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고소당한 전례와 민원인 고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식 민원 접수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민원 제기부터 위축되고 현장점검 여부조차 불분명한 것이 현 관리체계입니다.

오늘 결산은 정부의 예산과 행정력이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졌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민 세금 낭비 아닙니까? 환자안전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사고 이후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관할 보건소의 문제만으로 돌린다면 사실상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고를 의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스스로 판단할 정보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직접 물어도 의료기관이 부인하면 확인할 공식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까지 환자에게 공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환자가 알 수 없다면 환자는 뭘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실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환자에게 알리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두 가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이를 파악하고 점검할 현행 관리체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환자안전에 위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둘째, 확정판결 이력만으로도 공개하자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무엇입니까? 반대이십니까? 반대한다면 근거와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고 이번 치과 점검 내역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회의 종료 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환자안전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그런 중대사고가 반복됐을 때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언급하신 의료법상에 조사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또 별도의 환자안전법이 있어서 사망과 같은 그런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제도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이런 게 반복되면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환자안전법상의 관리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실효성 있게 강화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자기본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하위법령 만들고 할 때 환자안전을 좀 더 강화하는 제도와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확정판결에 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공개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과실이든 상관없이 중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소송,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법을 개정해서 이런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하에서 이런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강화하겠고.

단지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실범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유사한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대한 수술이나 응급치료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망사고들도 있을 수 있어서 필수의료에 대한 깊이나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균형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번 치과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다른 발언하실 위원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해안과 지해를 모아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일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결산 관련 사업들을 세심하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모두는 국민들을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식의약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결산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감염병을 비롯한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손을 들지는 못했는데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위원장 이만희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백선희 위원 기초연금 개편안,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의결까지 마친 사항이긴 한데……

간단하게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발언해 주십시오.

○백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후로도 많은 보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꾼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빈곤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기초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깜깜이

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 현재는 기준이 하위 70%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대상자에 변화가 있을지, 다시 말해서 지금은 하위 70%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70%가 아니라 그 밑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안이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담을 건지에 대한 기준을 같이 여러 부처, 관련 부처가 검토 중에 있고 정부안이 조금 정리가 되면 아마 브리핑이나 이런 형태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개편안을 만들고 예산을 그거에 따라서 편성하더라도 기초연금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선희 위원**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래서 국회에서 당연히 예산과 법률을 같이 심의하시면서 공론화가 될 거라고……

○**백선희 위원** 그렇지요. 예산에 따라서 대상자가 70%가 아니고 그 하향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니요, 정부안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은 확정된 안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백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절차가 까맣이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정부안이 확정되면 브리핑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하반기 국회에서……

○**백선희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단은 70%가 유지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것이 육십몇 퍼센트가 되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70%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백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빈곤 완화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빈곤 완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사실은 같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데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만들게 되면 빈곤율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정도 기대를, 몇 퍼센트 정도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으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물론 기초연금이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성숙되면서 수급자나 수급액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도 봐야 되고 또 그 밖에 주택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체계하고도 같이 봐야 돼서 쉬운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하지만 기초연금이 어쨌든 목적이 노후소득, 노후빈곤을 해결하는 것에 좀 더 타깃팅해서 설계를 한다는 건……

○**백선희 위원** 조금 타깃팅이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하후상박 구조로 바꿈으로써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대략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후상박 구조로, 물론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원·투·쓰리일 때 빈곤율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인지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하고도 관련이 있고 퇴직연금하고도 관련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국민연금 제도하고의 밀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거고. 처음에 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을 때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면서 동시에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하고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에서 공적연금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을 논의할 때 국민연금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논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총합으로 나의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개편하는 방안으로 인해서 현재는 급여의 대상자이지만 이 급여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다면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정부 주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의견이 실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정부안이 발표되면 그때 또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민연금하고의 연관이 중요하고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것들은 추계를 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부의 안을 일단 확정하는 단계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게 공개가 되면 아마 기초연금법 개정을 국회에서 심의하시고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또 의견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발언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절차를 저희들이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회의 진행 협조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준 장관께서도 잘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여튼 위원들 얘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백종헌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장에게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8월 28일까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권칠승 김교홍 김기웅 김 윤 박용갑 박지원 백선희 백종현 서영석 소병훈
이만희 이소희 이수진 전종덕 조배숙 최보운 한지아 허종식

○출장 위원(4인)

남인순 이인영 전진숙 이달희

○청가 위원(1인)

서미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신은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현수엽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김국일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직무대리 김현숙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손영래
대변인 권병기
정책기획관 이윤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김기남
기획조정관 장호연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8.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1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8.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8.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8.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25)

이상 4건 8월 19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9.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9.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9.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9.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9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4)

이상 11건 8월 20일 회부됨

○의안 철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8)

이상 2건 8월 20일 발의자 철회 요구